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345호

## 2025년도 「경남 글로벌 혁신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기업육성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특구 사업자의 신산업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 · 해외 인증지원을 위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비R&D)」 시행 계획에 따라 「2025년도 경남 글로벌 혁신특구 차세대 첨단위성 기업육성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 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12.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 규제특례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및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23.5.8, 대외경제장관회의)
-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현지실증 · 해외인증 취득 지원
  -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 및 실증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 나. 추진체계



- | 주관기관(경남테크노파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단 총괄 관리 및 지원</li><li>• 특구사업자 선정 및 지원(신산업 책임보험, 실증 및 인증, 글로벌 네트워크 등 지원)</li><li>• 성과 및 만족도 조사</li></ul> |  |

신산업보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구사업자의 국내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차세대 첨단위성 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 · 외 실증 및 해외 인증 연계 지원</li><li>•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통한 특구 사업자 해외 진출 지원</li><li>• 국외 현지실증 및 인증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li></ul>

## 2

## 지원내용

### 가. 지원방식 및 대상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규제자유특구위원회('25.5.22)에서 선정된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순번	지역	글로벌혁신톡구명	특구 지정기간
1	경상남도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5.6.1.~'29.12.31.

###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순번	사업내용	지원기업 수	기업당 지원규모
1	신산업 책임보험	22개 기업 내외	최대 700만원/년 내  ■ 보험금액의 국비 70%이하, 지방비 20%이상, 민간부담금 10%이상 ■ 지원 최대금액은 국비(490만원), 지방비(140만원) 까지 지원
2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 지원 최대금액은 340백만원(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국비지원 비율 70% 이내, 지방비 비율 20% 이상, 민간부담금 10% 이상 ※ 예시) 340백만원 사업계획서 작성시 ⇒ 국비지원 238백만원 기준, 지방비 68백만원, 민간부담금* 34백만원 ※ 민간부담금의 현금 비중은 30%이상	5개 기업 내외	340백만원/년 내

\* 지원기업 수 및 기업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1차연도(7개월)	2차연도(12개월)	3차연도(12개월)	4차연도(12개월)
연차별 지원기간	2025. 6. ~ 2025. 12.	2026. 1. ~ 2026. 12.	2027. 1. ~ 2027. 12.	2028. 1. ~ 2028. 12.

### 다.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특구사업자
    - \*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25.5.22.), 중기부 고시 제2025-62호 ('25.5.30.)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현지실증 · 해외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과제별로 지원기간에 대해 전문기관, 주관기관, 수혜기업 3자 협약 체결</li> <li>○ 정부지원금(국비, 지방비)은 협약 후 2차 분할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사업비 구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형태</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국비)</td> <td>현금</td> <td>총사업비의 70% 이내</td> </tr> <tr> <td>지방자치단체지원금(지방비)</td> <td>현금</td> <td>총사업비의 20% 이상</td> </tr> <tr> <td>기관부담비금(민간부담금)</td> <td>현금*, 현물</td> <td>총사업비의 10%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형태	비율	정부지원금(국비)	현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방자치단체지원금(지방비)	현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기관부담비금(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총사업비의 10% 이상		
구분	형태	비율															
정부지원금(국비)	현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방자치단체지원금(지방비)	현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기관부담비금(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총사업비의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li> </ul>																
사업비 구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형태</th> </tr> <tr>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h>시장형 공기업</th> <th>비영리 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실증 R&amp;D 기업지원 수혜기업, 기반조성</td> <td>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단, 창업 후 협약 일자까지 3년 미만 중소기업은 20% 이상, 협약일자까지 7년 미만 중소기업은 30% 이상)</td> <td>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td> <td>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td> <td>필요시 부담</td> </tr> </tbody> </table>			구분	형태				중소기업	중견기업	시장형 공기업	비영리 기관	실증 R&D 기업지원 수혜기업, 기반조성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단, 창업 후 협약 일자까지 3년 미만 중소기업은 20% 이상, 협약일자까지 7년 미만 중소기업은 30% 이상)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필요시 부담
구분	형태																
	중소기업	중견기업	시장형 공기업	비영리 기관													
실증 R&D 기업지원 수혜기업, 기반조성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단, 창업 후 협약 일자까지 3년 미만 중소기업은 20% 이상, 협약일자까지 7년 미만 중소기업은 30% 이상)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필요시 부담													
	<p>* 근거: 운영요령 제24조(민간부담금) 제3항을 따르되, 중소기업은 7년 미만 중소기업 기준 적용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은 30% 이상으로 정함          *(민간부담금) 수행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 체결 시 개설된 계좌에 민간부담금 매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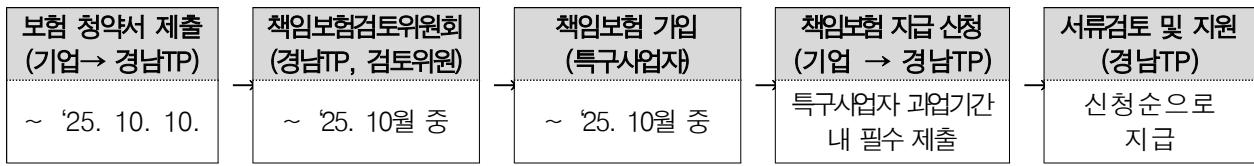
## 마.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

### 1)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 지원내용 : 책임보험 가입료 최대 700만원/년 이내 지원
  - (지원금) 기업당 국비 490만원, 지방비 140만원(민간 70만원 이상 매칭 必) 이내

지원유형	지원방향
책임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와 관련된 국내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필수, 이에 대한 일부 보험료 지원</li> <li>※ 법적 보상한도(대인 1.8억원, 사고당 10억원) 적용 필수</li> <li>※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해당 금액 특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li> <li>※ 실증특례 ·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li> </ul>

- 지원절차



- 주관기관이 기 확보한 책임보험사 또는 특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보험사를 통해 책임보험에 내실있게 설계되도록 안내하고, 책임보험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사업자가 제출한 책임보험 자료를 검토할 예정임
  - 특구사업자는 보험가입 전 책임보험사를 통해 작성한 보험 청약서를 주관기관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단, 해당 자료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증명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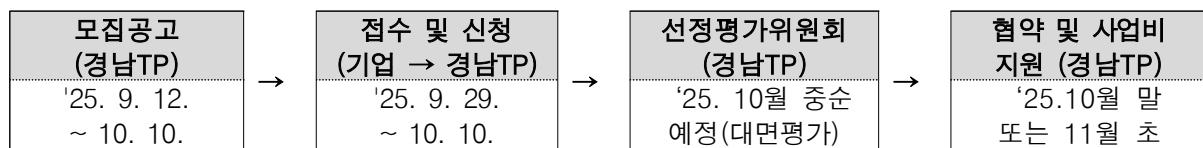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신청서	PDF/한글	서식1
2	책임보험 증권 및 책임보험료 완납 증명서	PDF	관련 증명서
3	사업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PDF	
4	재무제표(최근 3개년), 외감법인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PDF	국세청 흠택스 출력분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6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PDF	서식2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PDF	서식3
8	청렴 · 성실의무이행 · 중복지원방지 서약서	PDF	서식4
9	기업 성과분석 정보제공 동의서	PDF	서식5
10	글로벌 혁신품목 사업자 이전 확약서(해당시)	PDF	서식6
11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7

## 2)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 추진목적 : 차세대 첨단위성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신산업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지원
- 지원내용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최대 340백만원/년 이내
  - (지원금) 기업당 국비 238백만원, 지방비 68백만원(민간 34백만원 매칭)
- 지원절차

지원유형	지원방향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분석) 특구 사업자별 보유 기술 · 규제 · 필요 시험 · 인증 등 분석을 통한 국내 · 외 기술 및 인증 문제점 분석</li> <li>•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점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전문기관을 매칭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li> </ul> </li> </ul>

지원유형	지원방향
	<p>하고 중간점검을 통하여 지속 관리 수행 및 최종 결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수행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특구 사업자별 분야 및 대상을 세분화하고, 필요 기술과 인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축적 등 역량 강화 수행 지원</li> </ul>
국내 검증 시험 분석 및 장비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인증 및 실증을 수행하기 전 우주 환경에 대한 검증을 위해 컨설팅, 분석, 검증 시험 비용 지원</li> <li>• 국내 · 외 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 시험 장비 이용지원</li> </ul>
국외 검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 사업자가 개발한 우주 개발 절차, 부품(기술), 위성 인프라 등에 대한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인증기관 협업 및 검증 지원</li> </ul>
국외 실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 제작 결과 검토 비용, 궤도상 성능 실증을 위한 지상국 활용, 상용 부품 활용 체계 및 타 위성체 등을 활용한 우주 부품 궤도상 실증을 위한 비용 지원</li> </ul>
협력 네트워크	<p><b>① 특구사업자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과 협력 네트워크로 자문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시 함</b></p> <p>② University of Surr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versity of Surrey는 대한민국 국적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제작에 관여하였으며, 관련 연구 및 시험/평가/인증 관련 글로벌 기관임</li> </ul> <p>③ SSC와 SSTL이 보유하고 있는 궤도상 전력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모델링 및 분석 기술</p> <p>④ 고에너지밀도 및 고안전성 우주용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태양전지 개발 절차 및 요구조건</p> <p>⑤ 초경량 우주태양전지–우주용 배터리–전력변환장치를 통합한 플랫폼 개발 및 검증</p> <p>⑥ 유럽 기준 위성 시스템 검증 요구 조건 및 수행 절차</p> <p>③ 제트추진연구소(JPL–NAS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운영하며, 우주탐사, 과학연구, 로봇공학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 특히 다수의 항공우주 시스템 엔지니어링, 우주탐사 프로젝트(화성 탐사, 심우주탐사) 수행을 통해 시스템 설계, 통신, 우주환경분석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li> </ul> <p>① 위성 시스템 개발 관련 Procedural Requirement 등의 관리 및 개발 절차</p> <p>② 위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주요 요구조건 설계, 버짓 및 달성을 기능성 분석 기술</p> <p>③ 위성 시스템 개발 업무분석체계(WBS) 할당 및 적용 방안</p> <p>④ 위성 시스템 검증/실증 요구조건 및 수행 절차</p> <p>⑤ 위성 운영 조건에 따른 우주 환경(방사선등) 분석 기술 및 설계</p> <p>⑥ 우주시스템 관련 기관 보유 기술이전 관련 해외 사례 및 절차</p>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비R&D 수행계획서	PDF/한글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PDF	
3	재무제표(최근 3개년), 외감법인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PDF	국세청 흠택스 출력분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PDF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6	법인등기부등본	PDF	
7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PDF	서식 2
8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PDF	서식 3
9	청렴 · 성실의무이행 · 중복지원방지 서약서	PDF	서식 4
10	기업 성과분석 정보제공 동의서	PDF	서식 5
11	글로벌 혁신투구 사업자 이전 확약서(해당시)	PDF	서식 6
12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 7
13	경영구조(이사회 구성원 정보 포함)	PDF/한글	서식 8
해당시	벤처기업확인서,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	PDF	가점요인
해당시	지역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시 관련 증빙	PDF	가점요인

- 선정절차: 공고를 통한 실증 및 인증계획서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
- (선정평가) 관련 전문가 및 TP 등 6인 이내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방식)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적정성 검토
- \* 지원 사업비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실증 및 인증 선정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I. 대표자 및 경영관리 (30점)	1.1 대표자 전문성, 신뢰성	20
	1.2 해외시장 진출 의지	5
	1.3 경영관리수준	5
II. 기술성 및 사업성 (40점)	2.1 기술 우위성/차별성 - 지원에 따른 개발 기술(제품)의 우수성	10
	2.2 연구/기술 역량 - 글로벌 진출 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방안	10
	2.3 해외실증계획의 우수성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연계를 통한 글로벌 진출 전략 및 내용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등	10
	2.4 사업성 - 지원에 따른 신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10
III. 기여도(30점)	3.1 지역사회 기여/영향력 -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투구 목적과의 부합성	30
IV. 가점사항	4.1 중소벤처기업	5
	4.2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	5
	4.3 지역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하고 있는 경우	5
<b>합계(100점)</b>		<b>100</b>

## 바.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수혜기업이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집행
  - 협약체결 후 과제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제출시 비R&D 지원금의 2회 분할 지급
  - 총 사업비 기준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클린카드 발급 후 사업비 사용 필수
  - ※ 특구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및 필요시 전문기관 협의
  - ※ 국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오프라인 관리 및 사용
- (사용방식) 국비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 카드 사용만 인정
  - ※ 관련 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 사업비 카드는 클린카드로 발급하되, 클린카드 신청서 사본을 협약 시 제출
- 사업비 지원 가능 비용
  - 사업비는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가입, 글로벌 진출(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 ※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작성 시 아래 표의 “보조세목” 항목으로 작성

보조세목	내 용
공공요금및제세	• (보험료) 신산업 실증 책임 보험 가입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재료비 등	•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관련된 아이템의 제품 (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도구, 데이터 등 구입비
일반용역비 등	• (외주용역비)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특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등 (자본적 경비 제외)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관련 비용

보조세목	내 용
보수 / 일용임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특구사업자 소속직원이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불가능</li> <li>※ 정부지원금의 50% 까지 계상 가능</li> </ul> </li> </ul>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수수료)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 인증비, 멘토링비, 통역비 등으로 집행</li> </ul>
국내여비 /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비 · 체제비) 특구사업자 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체류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실증기관 또는 해외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행사 또는 기술개발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등 참석을 포함</li> </ul> </li> </ul>
일반수용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고 선전비)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li> </u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료) 제품 성능 ·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li> <li>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ul>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li> <li>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 · 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li> <li>시설비 · 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li> <li>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특근매식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 등)</li> </ul>

### 3

## 지원제외 처리기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처리

구 분	지원제외 대상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사업 시작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금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li> </ul>														
		② 참여제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사업 시작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단, 1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i> </ul>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시작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작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사업 계획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li> </ul> </li> </ul>														
사전검토 기준 (요령 제16조 관련)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사전지원제외대상</th><th>사후관리대상</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검토 기준</td><td>1. 기업의 부도</td><td>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td></tr> <tr> <td>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 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td><td>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td></tr> <tr> <td>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 (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td><td>1.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 채비율이 500% 이상</td></tr> <tr> <td>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d>2.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유 동비율이 100% 이하</td></tr> <tr> <td>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td><td>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말 감사 의견이 “한정”</td></tr> </tbody> </table>	구분	사전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대상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 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 (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1.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 채비율이 500% 이상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유 동비율이 100% 이하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말 감사 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대상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 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 (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1.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부 채비율이 500% 이상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유 동비율이 100% 이하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말 감사 의견이 “한정”														

구 분	지원제외 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대상												
	<p>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li> <li>※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li> </ul> <p>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집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p>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p>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성 검토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li> <li>◦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 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부실” 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li> </ul> </li> </ul>												
<p>④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대한 기업(주관) 수행가능 과제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수행 중 과제수</th> <th>신규 신청가능 여부</th> <th>신규 수행가능 과제수</th> </tr> </thead> <tbody> <tr> <td>2개</td> <td>불가</td> <td>불가</td> </tr> <tr> <td>1개</td> <td>가능</td> <td>1개</td> </tr> <tr> <td>0개</td> <td>가능</td> <td>2개</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타 과제의 잔여기간이 협약 시작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사업화지원, 기반조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는다.</li> <li>- 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li> </ul>	수행 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수행 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p>⑤ 기타 장관이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p>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li> </ul>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 · 폐업 중인 기업</li> <li>◦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li> </ul>													

구 분	지원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li> <li>○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li> </ul> </li> <li>○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재재정보공개 중인 경우</li> <l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li> <li>○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li> </ul>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4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에 한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2025. 9. 12.(금) ~ 2025. 10. 10.(금) 18시까지								
접수기간	■ 2025. 9. 29.(월) ~ 2025. 10. 10.(금) 18시까지								
접 수 처	■ 서식은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a href="http://www.gwtp.or.kr">www.gwtp.or.kr</a>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동 사업 공고 선택								
문 의 처	<p>■ 문의처</p> <table border="1"><thead><tr><th>특구</th><th>기관</th><th>문의처</th></tr></thead><tbody><tr><td>(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td><td>(재)경남테크노파크</td><td>e-mail 박광제 팀장 kjmpark7646@gntp.or.kr ☎ 055-795-2273  맹지혜 전임연구원 mjh2480@gntp.or.kr ☎ 055-795-2271</td></tr></tbody></table>			특구	기관	문의처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	(재)경남테크노파크	e-mail 박광제 팀장 kjmpark7646@gntp.or.kr ☎ 055-795-2273  맹지혜 전임연구원 mjh2480@gntp.or.kr ☎ 055-795-2271
특구	기관	문의처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	(재)경남테크노파크	e-mail 박광제 팀장 kjmpark7646@gntp.or.kr ☎ 055-795-2273  맹지혜 전임연구원 mjh2480@gntp.or.kr ☎ 055-795-2271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u>특구사업자가 아닌 자의 사업신청은 선정에서 제외</u></li><li>■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 사업계획서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li></ul></li><li>■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과제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의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요청<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li></ul></li><li>■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li><li>■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li><li>■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중 타 지원과제와 중복수혜를 지양하기 위해 해외 실증 R&amp;D 사업 등 재정지원과제 내 동일 항목에 대한 비용 계상 되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불가</li></ul></li><li>■ 자세한 사항은 세부 신청서 내 유의사항 참조</li></ul>								